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21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3일

발 의 자: 김춘곤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춘선, 박환희,
소영철, 신동원, 신복자,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병운, 이상욱,
이은림,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한 신,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6명)

1. 제안이유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함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를 “함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 「군인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를 “ 「군인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함은 「병역법」 ”을 “함은 「병역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출자·출연기관에게”를 “출자·출연 기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p> <p>2. “장해”라 함은 「군인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p> <p>3.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 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p> <p>4. “전상 청년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전</p>	<p>제2조(정의) ----- -----.</p> <p>1. ----- 함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p> <p>2. ----- 「군인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 ----- ----- -----.</p> <p>3. ----- 함은 「병역법」----- ----- ----- ----- ----- ----- -----.</p> <p>4. -----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p>

제2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생략)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로 전역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훈

보상대상자로 등록한 사람

제2호-----

----- 국가보훈부장관 -----

-----.

7.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

-----.

1. (현행과 같음)

2. -----

-----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3. -----

-----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4. (생략)

제8조(대행·위탁) ① 시장은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① 시장은 청년 장애 세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제공자에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4. (현행과 같음)

제8조(대행·위탁) ① -----

----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출자·출연 기관에게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① -----

----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② -----

-----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문서번호

2023081700000010

비대상사유서

요청인 : 김춘곤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수일 : 2023.08.17.

회신일 : 2023.08.21.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한 조례안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